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125 |
|----------|-------|

제출년월일 : 2019. 3.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청년, 청년배당, 지역화폐에 대한 용어 정의
- 지급대상(안 제4조)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5조)
 -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안 제6조)
 -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며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함

□ 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비용 추계서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9. 2. 1. ~ 2. 21.(20일간)

기타 참고사항

방침결정문 : 붙임 4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 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 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안산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대상 중에서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배당 지급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자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소관 실·과 | | 정책기획관 |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정책기획관 신항식 |
| | 담당·팀장 직위·성명·전화 | 인구청년정책팀장 연창희 |
| | 담당자 성명전화 | 김동욱 (행정 3909) |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제8-125호 |
|----------|---------|

제안년월일 : 2019. 4. 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 수정이유

-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에 대한 적용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 청년배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한 적용례 대상 조항을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안산시”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안산시”를 “시”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지급대상”을 “지급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